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19-98호, 2019. 10. 28.)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2월 2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2026. 2. 27.

1. 개정 이유

「식품위생법」(법률 제21299호, 2025. 12. 30. 개정·공포, 2026. 12. 31. 시행) 개정에 따라 제조·가공 등으로 유전자변형 디엔에이(DNA, Deoxyribonucleic acid) 또는 유전자변형 단백질이 남아 있지 않은 유전자변형식품 등 중에서 유전자변형식품 표시대상을 정함으로써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함

식품의약품안전처

2. 주요 내용

가. 유전자변형식품 표시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안 제3조제2항)

- 1)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한식간장, 양조간장, 산분해간장, 효소분해간장, 혼합간장 및 간장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혼합장·기타장류
- 2)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당류
- 3)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식용유지류

3. 의견 제출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4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우편번호 : 28159,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참조 : 식품표시광고정책과, 전화 043-719-2192, 이메일: mfdskhj@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6-호

「식품위생법」 제12조의2에 따른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26년 월 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안)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12조의2,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및”을 “제12조의2 및 제12조의3,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및 제17조의3,”으로 한다.

제2조제1호가목 중 “「식품위생법」 제12조의2제1항”을 “「식품위생법」 제12조의2제1항 및 제2항”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을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제3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항(중전의 제2항) 전단의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하며, 같은 항(중전의 제2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식품, 식품첨가물, 건강기능 식품 또는 축산물”로 하며, 같은 항(중전의 제2항) 제2호를 삭제한다.

제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조·가공 등으로 유전자변형 DNA 또는 유전자변형 단백질이 남아 있지 아니한 유전자변형식품등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전자변형식품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1.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한식간장, 양조간장, 산분해간장, 효소분해간장, 혼합간장 및 간장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혼합장·기타장류
2.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당류
3.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식용유지류

제5조제8호 전단 중 “제3조제1항”을 “제3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제7조 중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를 “2027년 1월 1일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로 한다.

부 칙 <제2026- 호, 2026. . .>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6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2항제2호 및 제3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27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 이후 제조·가공 또는 수입되는 유전자변형식품등(선적일 기준)에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 당시 제조·가공·판매 또는 수입되어 검사가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하여는 중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를 원재료로 사용하여 제조
·가공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 다만, 이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갖추어야 한다.

가. ~ 다. (생략)

2. 고도의 정제과정 등으로 유전자변형 DNA 또는 유전자
변형 단백질이 전혀 남아 있
지 않아 검사불능인 당류, 유
지류 등

제5조(표시방법) 유전자변형식품
의 표시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
다.

1. ~ 7. (생략)

8. 제3조제1항에 해당하는 표시
대상 중 유전자변형식품등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로서, 표시
대상 원재료 함량이 50%이상
이거나, 또는 해당 원재료 함
량이 1순위로 사용한 경우에
는 “비유전자변형식품, 무유전
자변형식품, Non-GMO, GM
O-free” 표시를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비의도적 혼입치
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 식품, 식품첨가물, 건
강기능식품 또는 축산물. ---

-----.
가. ~ 다. (현행과 같음)

<삭제>

제5조(표시방법) -----

--.
1. ~ 7. (현행과 같음)

8. 제3조제1항 및 제2항-----

-----.

9. (생략)

제7조(재검토기한) 「행정규제기
본법」 및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
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
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
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9. (현행과 같음)

제7조(재검토기한) -----

--- 2027년 1월 1일을 기준으
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